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단113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68279호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 C에 대하여 D에 양수금 84,809,419원 및 그 중 21,799,488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5.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9. 8. 1. D를 대리하여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의 아버지인 E는 2018. 5.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자녀인 C, F, G(각 상속지분 2/9)가 있다.

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9. 6. 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앞서 본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비롯한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위 등기 경로 시점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4. 13.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9. 6. 11.에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자녀들이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피고가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목

1. 전라남도 고흥군 답 206㎡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6.10㎡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변소 6.48㎡ 끝.

